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858

발의연월일: 2022. 10. 19.

발 의 자: 박대출・이양수・조은희

강대식 • 신원식 • 정경희

송언석 · 최영희 · 김영식

최형두 · 최춘식 · 권명호

박형수 · 김정재 · 김상훈

박성민 • 이종성 • 조명희

이 용・전주혜・노용호

안병길 · 양금희 · 서일준

황보승희 · 임병헌 · 김미애

이만희 • 배준영 의원

(29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자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열람 동의를 받기어려워 미납국세 열람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1항).

법률 제 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전에 건물 소유자"를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경우 관할"을 "경우 열람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해당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납국세 등의 열람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①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 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건물 ----- 전 또는 임대차계약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그 자가 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 납부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작하는 날까지 임대인-----국세 또는 체납액의 열람을 임 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 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 ----- 경우 열람 우 관할 세무서장은 열람 신청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에 따라야 한다.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 으며, 신청을 받은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해 당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 는 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 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세무
	서장은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